

국제TSG연구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유네스코의 전통스포츠와 놀이(TSG, Traditional Sports and Game)를 보호하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본교)부설 국제TSG연구소(이하연구소)라 칭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
1. TSG 전문적 학술연구
2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
3. TSG 발굴 및 보급
4. TSG관련 지역과 산학협동
5. 연구지 발간 및 학술회의, 연구발표회 개최
6. 외부위탁연구과제의 수탁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2장 조직

제4조(임원)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자문위원
2. 소장1인
3. 간사 1인
4. 부과장 1인 부과위원 3인
5. 보조연구원 약간인

② 소장은 총장이 승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소장이 승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부과구성 및 운영) ① 연구소의 목적달성과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과를 설치한다.

1. TSG부과/ 주요 운영업무와 TSG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2. 문화산업부과 / 전통스포츠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3. 건강관리부과 / 학교, 공공 및 민간시설의 TSG를 통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.

② 부과장은 부과를 대표하여 연구원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④ 소장은 연구소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연구위원) 소장은 교내.외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위원을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임원과 약간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(매 학년초)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
③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가.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
제8조(기능)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 소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
1. 예산과 결산 심의
2. 운영계획 수립
3. 연구업무의 관리
4. 조교 및 연구보조원 임명
5. 분과의 업무 조정
6. 연구소 규정 개정
7. 기타 중요사항

제4장 재정

제9조(재정) 본 연구소의 경비는 교내지원금, 사업수익금, 기부금,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예원예술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준하여 적용한다.

제11조(사업승인 및 보고) 연구소의 사업승인 및 보고는 예원예술대학교의 <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른다.

제12조(재산의 귀속) 본 연구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부 칙(2015. 3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